2024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

- KOTRA충북지원단

1. 추진목적

○ 충북도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4. 2월 ~ '25. 1월(붙임1)

○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36개사 내외**(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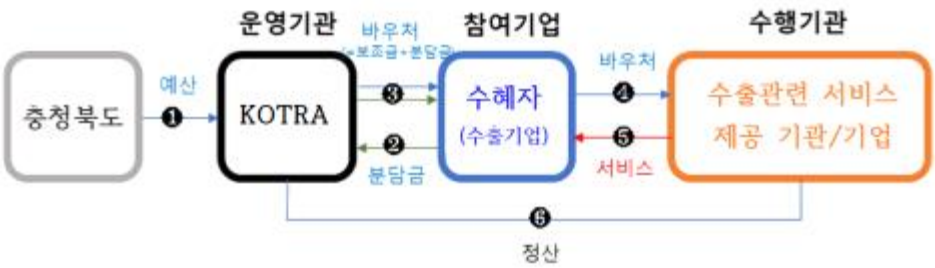
* '23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 실적 $50,000 이상 보유기업

○ (주최/운영) 충청북도 / KOTRA충북지원단

○ (사업내용) **①바우처 발행** 및 **②맞춤형 컨설팅** 실시

①**(바우처 발행)**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❶국고+❷기업자부담)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❸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❹❺이용한 후 ❻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14개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붙임3)

⁑ 수행기관과 바우처 서비스 계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참가기업 부담

⁂ 선정기업 대상 바우처 활용 설명회 개최하여 기업 활용능력 제고

②**(맞춤형 컨설팅)**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KOTRA 및 기타 수출지원 서비스 활용 지원

3.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지원요건)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23년도 관세청 기준 수출 실적 $50,000 이상 보유기업

○ (지원한도) 기업별 바우처 최대 3천만원(도 보조금 80% + 기업 분담금 20%)

바우처 발급액	충북도 보조금 (80%)	기업분담금 (20%)
2,000만원	1,600만원	4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600만원

* 바우처 발급액(신청액)은 활용계획서 제출시 확정(중도 변경 불가)

4. 신청 및 평가방법

○ 신 청 처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온라인 신청

* CBGMS 홈페이지 : cbgms.chungbuk.go.kr

※ 추후 선정기업 대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가입 필수

○ 신청기간 : '24.01.17. ~ 02.12. 24시까지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수 (CBGMS)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수출바우처 활용	바우처 정산 및 환급금 송금
'24.1.17. ~ 2.12.	'24.2.13 ~ 2.29.	'24.3월 상순	'24.3월	'24.3.1 ~ '24.11.15	'24.11.15 ~ '25.1.31

* 추진 일정은 세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 (1차) 서류평가(계량) → (2차) 활용계획서 평가(비계량)

- (1차) 서류평가(계량) : 평가기준표에 의거 배점
- (2차) 활용계획서 평가(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제출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일부 기업 현장점검 예정
- (최종) 1,2차 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정 발표 및 바우처 발급

○ **평가 기준 :** 「2024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상 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범주	평가지표
기업 경쟁력 (30점)	ㅇ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적합성 (30점)
정책 우대 (70점)	ㅇ 정부 지정 우수기업 해당(15점) - 품질경영우수기업/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고용우수기업/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창업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일자리으뜸기업 ㅇ 도내 사업장 소재(본점/공장)(15점) ㅇ 최근 2년간 충북무역의날 수상 경력(10점)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미응답(10점) ㅇ 신규 참가업체(직전 3개년 미선정)(20점)

*전년도 만족도조사 항목 평점시, 전년도 미참가 신규기업은 10점 부여

**지원제한기업으로 등재된 기업과 연간 지원범위 초과기업은 평점 시 최후순위로 배치

붙임 1.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 1부
2. 바우처 신청 제한기업 1부
3. 바우처 서비스 메뉴 1부 . 끝.

붙임1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

※ 서비스 완료 일자

○ 모든 서비스는 **2024년 11월 15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4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 정산 요청 " 등록**
*** 단, 디자인 개발 서비스의 경우 2024년 10월 4일까지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4년 11월 15일 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에까지 한하여 지원 가능**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바우처 사용계획)** 바우처 협약체결 1개월 내 바우처 활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기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ㅇ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ㅇ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ㅇ 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ㅇ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 수혜 불가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 등)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KOTRA 수출바우처 운영지침,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붙임2 바우처 신청 제한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4. 1. 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4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붙임3 바우처 서비스 메뉴(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수출 준비	①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②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제외) ※국제운송의 경우, 협약기간 내 최대 2천만원 사용
수출 후속관리	⑫서류대행/현지 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부 지원사업 별도활용 요망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됨

** 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